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88 제출연월일 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30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| 제30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|
| 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은 다 | ① |
| 음 각 호와 같다. |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6.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|
| | 조례로 정하는 재원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